

분류기호 문서번호	건지 30420-688	기안용지 (전화: 731-6382)		시행상 특별취급	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시		장	94
수신처 보존기간	1년				
시행일자	'90. 5. 23				
보조 기 관	부시장 주택국장 건축지도과장 건축계획과장 심관중	협조 기 관	법무담당관 도시개발과장 회계심사계장 건축행정계장 건축지도계장	문서 통제	결재 1990. 5. 23 통제 1990. 5. 23 발송인
기안책임자	경유 수신 참조	발신명의	시	장	발송인
제1안	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				
(제1안)	내부결재				
1. 건설부 건축 30420-32719('89.12.29), 도개 30420-323('90.3.8) 및 도개 30420-433('90.3.19)와 관련입니다.					
2. 건축법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안에 대한 일반공람('86.7.1 - '86.7.31) 및 건설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아래 내용과 같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하고, 관련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.					
건축과 추산필	아 래				
필필	가. 게재문안 : 공고안				
필필	나. 게재신문 : 일간신문 1개사 및 시보				

1505-25(2-1) 일(1)갑 85. 9. 9. 승인 "내가야끼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" 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g 가 40-41 1989. 12. 7.

다. 게재일자 : '90. 5.

라. 예산(광고료) : 580.800 원

3단 X 8CM X 22.080 X 1개사 X 1.1(부가세)= 580.800

마. 예산과목 : 주택관리비, 주택관리, 건축지도, 수용비및수수료

바. 지출방법 : 공고후 한국방송광고공사 청구에 의하여 지불

(제2안) 공 고 안

82년 5월 13일	134호
광복로	서울특별시
myo	7호

서울특별시 공고 제 319 호

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

1.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으로 목동중심지구에 대한 도시 설계를 수립하고, 건축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을 공고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0. 5.

지 구	위 치	규 모
목동중심지구	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내 19개	연장 4KM
	블록	면적 565,985.3M ²

(도시설계 주요내용)	
0 대지에 관한 사항	
공동개발, 대지분할 권장선, 대지분할 가능선, 대지교환	
0 건축물에 관한 사항	
높이, 용도, 건축한계선, 건축지정선, 벽면한계선	
0 옥외공간에 관한 사항	
주차출입구, 주차위치, 공공조경, 공공공지	
0 통로에 관한 사항	
보행전용통로, 보차혼용통로	
(도시설계도면 및 구역도) : 생략	
(제3안)	
수신 : 공보관	발신 : 건축지도과장
제목 : 공고문 일간신문 및 시보 게재 의뢰	
1. 우리시 관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를 위하여 별첨 공고안을 일간	
신문 및 시보에 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가. 제1안 가 -바함 이기시행	
첨부 : 공고안 1부. 끝.	

(제4안)
수신 : 건설부장관
제목 :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 보고
1. 귀부 건축 30420-32719호('89.12.29)와 관련입니다..
2. 우리시가 작성하고, 귀부에서 위대호로 승인한 우리시 관내 목동중심
지구 도시설계에 대하여 별첨 공고안(사본)과 같이 건축법 제8조의 2 규정에
의거 공고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3. 아울러 귀부 훈령 제650호('83.12.29)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
계획구역 627,577.4M ² 중 61,592.1M ² 는 도시설계구역에서 제외하여 공고하였음을
보고합니다.
첨부 : 공고안(사본) . 끝 .
(제5안)
수신 : 양천구청장
제목 :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('90. .)와 관련임.
2.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으로
목동 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수립 건축법

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본 법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였 . 통보하니,

3. 도시계획확인원 발부, 세부실천계획 수립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
바람.

첨부 : 1. 공고안 1부 (건축과, 도시정비과, 시민봉사실)

2. 도시설계도집 1부 (건축과, 도시정비과)

3. 도시설계구역 도서 1부. (건축과, 시민봉사실). 끝.

(제6안)

수신 :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장

1992. 5. 21
시 장

제목 :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('90 . .)와 관련입니다.

2. 우리시 관내 목동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수립 건축법 제8조의

2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기 통보하오니 업무처리에 ~~확인하시기~~ ~~확인없이~~

바랍니다.

첨부 : 1. 공고안 1부

2. 도시설계도집 1부. 끝.

1505-25(2-2) 일(1)을

85. 9. 9. 승인 "내가이런 종이 한장 놓아나는 나라살라"

190mm×268mm 인쇄용지 2급 60g /m²

제 40-11 1988. 1. 25

12

공 고

서울특별시 공고 제319호

서울특별시 관내 도시설계구역 지정 공고

1.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 계획으로 목동중심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를 수립하고, 건축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설계구역을 공고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와 관할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,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0. 5.

지 구	위 치	규 모
목동중심지구	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중심축내 19개블록	연장 4KM 면적 565.985.3M ²

(도시설계 주요내용)

0 대지에 관한 사항

공동 개발, 대지분할권장선, 대지분할 가능선, 대지교환

0 건축물에 관한 사항

높이, 용도, 건축한계선, 건축지정선, 벽면한계선

0 옥외공간에 관한 사항

주차출입구, 주차위치, 공공조경, 공공공지

0 통로에 관한 사항

보행전용통로, 보차혼용통로

(도시설계도면 및 구역도) : 생략